

1. 개정이유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보수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이면 신청에 따라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보수합산 신청 절차 및 결과 통지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절차 마련 등(안 제1조의4 신설, 제6조)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보수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 보수합산 신청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결과에 대한 결과 통지 근거를 마련함

나.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변경(안 제92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함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 포함) 이상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
으로 변경함

다.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등)

보수합산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자 복수사업장 피보험
자격 보수합산신청서를 신설하고, 고용보험 신청 서식에 '보수'를 작성
하도록 서식을 개편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보수 합산의 신청) ① 근로자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둘 이상 사업의 보수 합산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근로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보수합산신청서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 합산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제3조의2제2항·제4항”을 “영 제3조제3항제2호·제3조의2제2항·제4항, 제3조의3제3항”으로, “규칙 제1조의2제1항·제2항·제4항”을 “규칙 제1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호 중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보수를 80만원 이상(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의 1쪽과 2쪽, 별지 제1호의3서식의 1쪽과 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1쪽의 “월평균보수액”을 “월 보수”로 하고, 2쪽 작성방법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부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쪽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중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10. 3개월 미만 계약직으로서 월보수 80만원 미만 근로자”로 한다.

2. “월 보수”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개월 간의 보수(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에 대한 보수를 말하며, 이후에는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함)를 적습니다. 본 신고서 제출 당시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 금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뒤쪽의 작성방법 중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제3호,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 보수”란에는 퇴직월, 퇴직월의 전월·2개월전·3개월전에 근로자에 지급한 보수(「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를 월별로 적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1쪽의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총액, 임금총액” 부분을 아래와 같이 하며, 2쪽의 작성방법 중 제5호는 제7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는 제6호로 각각 변경하고, 제5호(기존 제6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월 보수	일	일	일	일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보수지급기초일수	원	원	원	원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간주)을 말하며, "월 보수"란에는 해당 월에 발생된 보수의 총액을 적습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임업·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입탈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용일	직종부호	주 소정 근로시간	
	일용근로자 여부 [] 에 [] 아니오		원	
	※가입탈퇴시 기재	월 보수		
		탈퇴월	탈퇴월 전월	탈퇴월 2개월전
원		원	원	원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입을, [] 가입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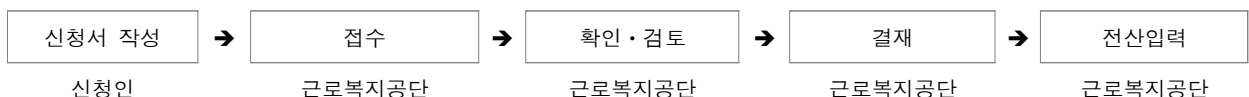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 및 어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 및 어업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신청 근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채용일은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을 적습니다. 3. 직종부호는 다음의 직종부호[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901</td><td>작물재배 종사자</td><td>902</td><td>낙농·사육 종사자</td><td>903</td><td>임업 종사자</td><td>904</td><td>어업 종사자</td><td>905</td><td>농림어업 단순 종사자</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5.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인 경우 “예” 부분에 표시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 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월보수” 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개월 간의 보수(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에 대한 보수를 말하며, 이후에는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함)를 적습니다. 본 신청서 제출 당시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 금액을 적습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가입탈퇴 시 “월 보수” 란에는 탈퇴월, 탈퇴월의 전월·2개월전·3개월전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월별로 적습니다.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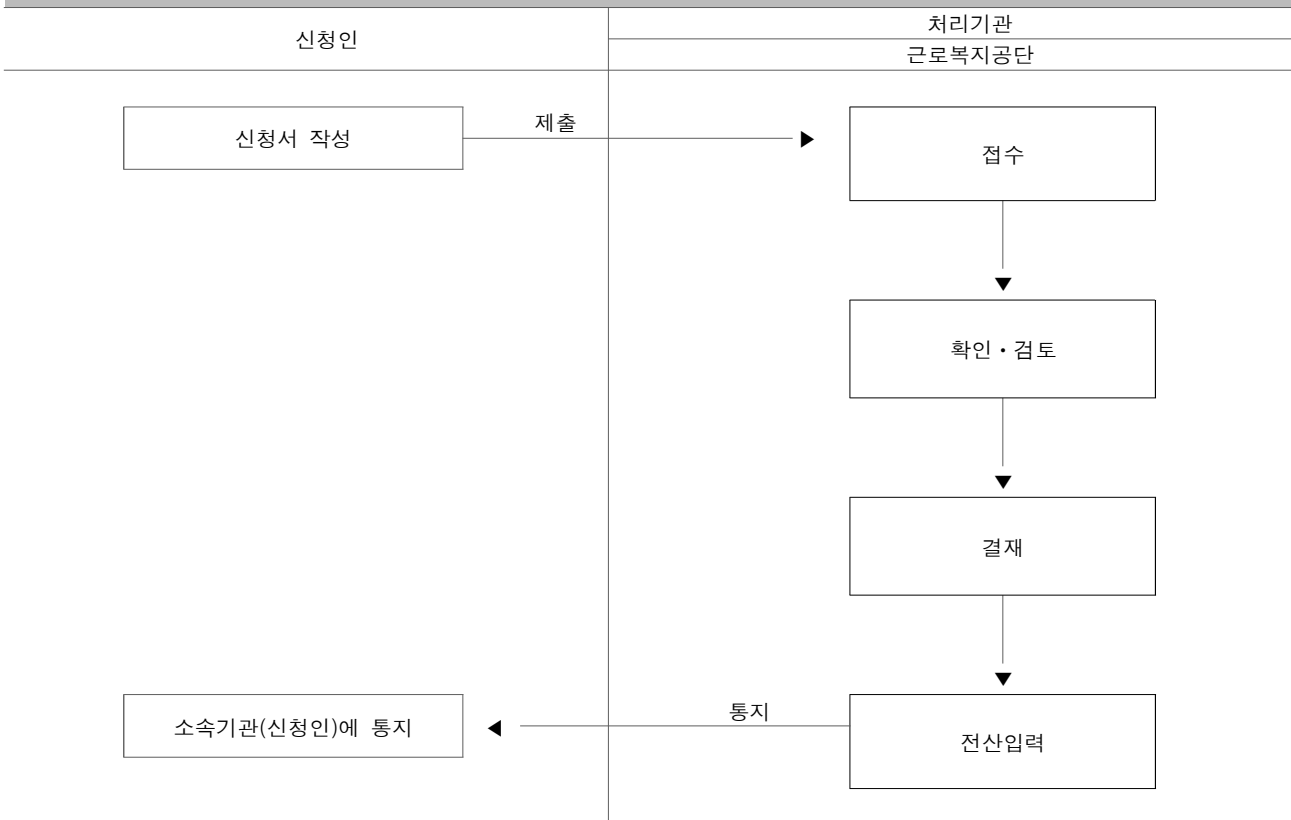
작성방법

1. 신청인은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가입탈퇴 대상인 공무원을 말합니다.
2. 직종 부호란에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란에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월보수”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개월 간의 보수(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에 대한 보수를 말하며, 이후에는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함)를 적습니다. 본 신청서 제출 당시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 금액을 적습니다.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5. 가입탈퇴 시 “월 보수”란에는 탈퇴월, 탈퇴월의 전월·2개월전·3개월전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월별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 가 입 신 청 서 [] 가입탈퇴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신청인	성명	영 문		
		한글표기	성 별	
			[] 남 [] 여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생년월일	체류자격		
채용일		직종 부호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 여부 [] 에 [] 아니오		월 보수 ※가입신청 시 기재 원		
※ 가입탈퇴시 기재	월 보수			
	탈퇴월	탈퇴월 전월	탈퇴월 2개월전	탈퇴월 3개월전
	원	원	원	원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입, [] 가입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장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아래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승인 여부	1. 승인 2. 불승인	외국인등록번호	
	미승인 사유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탈퇴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신청인은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합니다.
2. 직종 부호란에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란에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월보수”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개월 간의 보수(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에 대한 보수를 말하며, 이후에는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함)를 적습니다. 본 신청서 제출 당시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 금액을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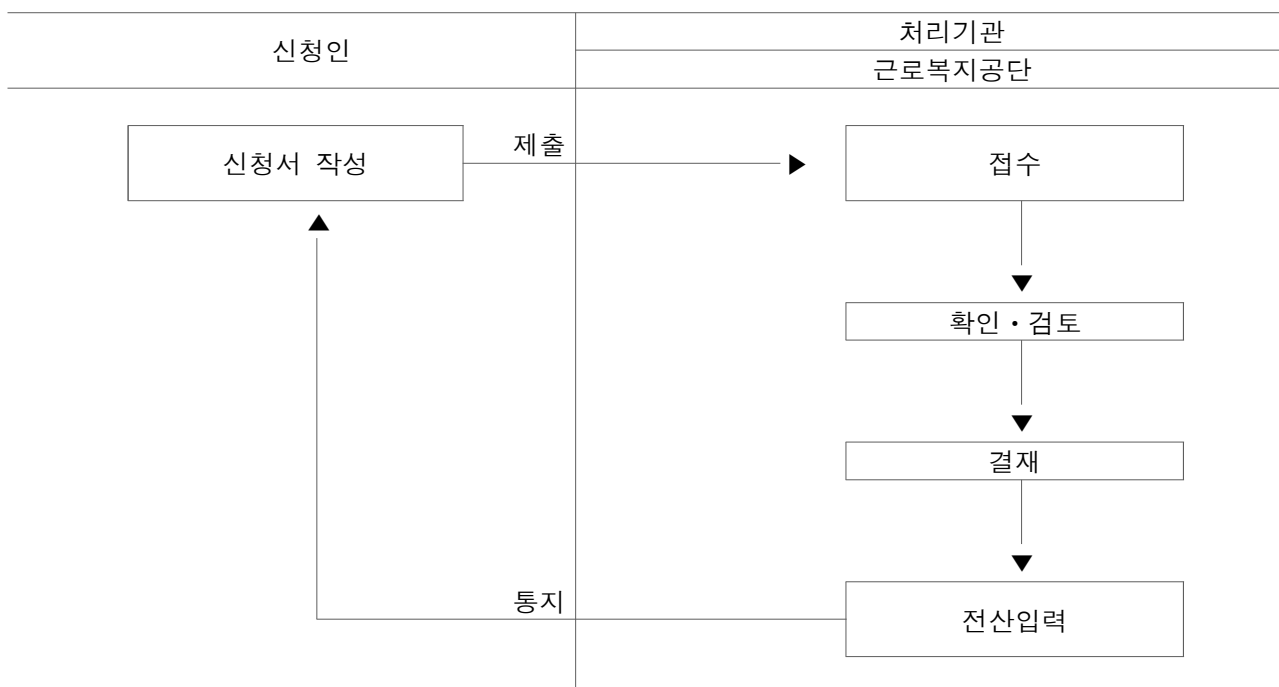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6. 가입탈퇴 시 “월 보수”란에는 탈퇴월, 탈퇴월의 전월·2개월전·3개월전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월별로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법」을 전부 적용받으려는 경우 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 따른 외국인인 취득신고 대상은 아니나, 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고용보험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처리절차



근로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보수합산신청서

[] 신규 가입
[] 추가 가입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부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연번	사업장 명칭	사업주 성명	사업장 전화번호	1주 소정근로시간
	사업장 소재지		고용된 날	월 보수
사업장1				시간
				원
사업장2				시간
				원
사업장3				시간
				원
사업장4				시간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보수합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등)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아래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승인 여부	1. 승인	2. 불승인	사업장별 자격취득일	
	불승인 사유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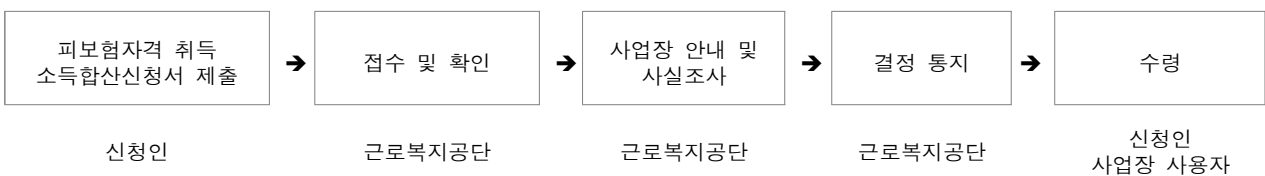
1.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각 사업에서의 월 보수의 합산액이 소득기준(80만원)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소득기준 이상이 되는 보수합산의 대상이 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에 따라 결정된 월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3. 보수합산 신청한 사업에서의 보수합산액이 소득기준 미만이 된 경우에도 보수합산 신청한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합니다.
4. 보수합산 신청한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도 보수합산 신청한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계속하여 취득합니다.
5. 보수합산 신청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 소득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그 밖의 사업에서는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작성방법

1. 보수합산신청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에 “√” 표시를 하고, 이후 최초 보수합산 신청한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되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보수합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추가 가입”에 “√” 표시를 합니다.
2. “직종부호”는 뒷면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고용된 날”은 각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5. “월 보수”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개월 간의 보수(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에 대한 보수를 말하며, 이후에는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함)를 적습니다. 본 신청서 제출 당시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 금액을 적습니다.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 부호	초일취득 · 당월상실자 남부여부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실사유		월 보수(원)										
								해당 연도		전년도				퇴직월 3개월전	퇴직월 2개월전	퇴직월 전월	퇴직월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희망 []																		
						희망 []																		
						희망 []																		
						희망 []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 보험사무대행
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